

#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기준에 관한 고찰\*

남 상 오\*\*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br>자산평가기준의 검토 |
| II. 자산평가기준의 역사적<br>변천과정 | IV. 맺는말                        |

## I. 머리말

회계학에 있어서 자산평가기준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고 과제이다. 회계학이 생성되고 발전된 이래 자산평가(asset valuation)는 이익측정(income measurement)과 함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알려져 왔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념은 회계학에 있어서 구도(求道)의 정신처럼 끊임없이 목표를 찾아 헤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리틀톤(Littleton)은 1974년 「회계이론의 구조」라는 모노그래프에서 자산평가는 이익과 함께 학문의 주요과제로서 무게의 중심(center of gravity)으로 회계학의 중심과제라고 표현하였다<sup>1)</sup>.

지금까지 자산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었다. 20세기초 또는 그 이전에 있어서는 역사적 원가회계(historical cost accounting)로서 역사적 원가 또는 취득원가가 자산평가기준의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초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가변동회계(accounting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그리고 곧 이어 대체원가회계(replacement cost accounting)가 나오면서 재무제표 전체를 물가지수로 수정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후 자산평가기준에는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현재가치(present value) 등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산평가기준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A. 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Monograph No.5, AAA, 1974, pp.18-20

으로서 ① 역사적 원가, ②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 ③ 순실현가능가치, ④ 현재가치의 네 가지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에 있어서 자산평가기준은 1958년 기업회계원칙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역사적 원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었고, 1962년 상법이 제정되면서 자산평가기준은 원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한정적으로 시가와 이를 보완한 저가가 규정되면서 원가주의, 시가주의, 저가주의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상법의 자산평가기준은 기업회계원칙에 도입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우리나라의 자산평가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자산평가기준에 대해 1965년에는 자산재평가법이 제정되어 역사적 원가회계 중심의 자산평가에 대해 시가를 보완하는 법률로서 자산재평가법이 기업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IMF 외환위기 사태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산평가기준의 제정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1985년 제정된 리스회계처리기준(나중에 리스회계처리기준칙으로 바뀜)이다. 여기서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면서 금융리스에 현재가치개념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현재가치가 중요한 자산평가기준이 되었다. 또 1990년대 중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재고자산평가기준에 한정적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는 유가증권평가에 있어서 시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사태는 한국회계에 큰 혁명을 일으켰고, 자산평가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8년 12월 11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액'을 기본개념으로 하면서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의 평가개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자산평가제도를 2000년 말까지만 존속하도록 자산재평가법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재평가는 기업회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서 대차대조표의 세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왜 자산의 평가기준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자산은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성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어떤 자산평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오히려 각 자산의 다른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금과 보유금액 자체로, 유가증권은 시가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제거한 회수가능금액으로, 재고자산은 시가 또는 순실현가능금액으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 원가로, 무형자산은 역시 상각누계액을 제거한 원가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투자자산 중에서 투자주식은 시가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리고 투자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이다.

부채와 자본의 평가는 자산에 비해 단순하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평가에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있으므로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액이 근소하고 상환기간이 짧으므로 실무적 편의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원래의 금액 그대로 둔다. 고정부채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고 상환기간이 길 수가 있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자본의 경우 자본이 원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residual interest)이므로 별도의 평가기준을 논하기 어렵다. 다만 자산과 부채에 대해 각각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차이는 자본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

이상의 글에서 자산평가기준의 역사와 함께 외국과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자산평가기준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1998. 12. 11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서는 IMF 외환위기 사태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분식결산의 억제, 국제회계수준으로의 회계기준의 개정이라는 압력에 따라 성급하게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개정에서 자산평가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성급한 개정이 없었는지 그리고 개정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논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문제의 지적에 앞서서 자산평가기준의 변천에 관한 과거 회계기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변천 과정을 아는 것과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한다.

## II. 자산평가기준의 역사적 변천과정

자산평가기준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자산평가기준의 역사적 변천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첫째, 재무제표의 일부계정을 수정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시에 재고자산평가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 평균원가법보다는 후입선출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특정의 유형자산에 대해 평가증(評價增)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재무제표 전체를 수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인플레이회계모형(inflation accounting model)이라고도 한다. 인플레이회계모형은 전체 재무제표를 물가지수로 수정하는 물가변동모형(price-level adjusted model)과 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로 수정하는 현행원가모형(current cost model) 또는 대체원가모형(replacement cost model)이 있다.

이들 두 모형에 대해 챔버스(Chambers)는 현행현금등가액모형(current cash equiv-

alent model)을 제시한 바 있으나<sup>2)</sup>, 이 모형은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실용적으로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물가변동모형과 현행원가모형은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광범위하게 실용화된 제도는 아니다.

셋째, 공시모형으로 자산평가기준 등 인플레이션정보를 주식에 보충적 정보로 공시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앞의 두 모형을 모두 이용하거나 어느 한 모형만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시가를 표시하거나 물가변동모형 또는 현행원가모형 중 선택하여 하나를 보충적 명세서로 주식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오늘날의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는 역사적 원가회계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 없는 시가 또는 물가변동모형, 현행원가모형을 보충명세서의 형식으로 주식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정보이용자는 역사적 원가회계모형과 함께 시가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회계가 고대회계(ancient accounting)로부터 발전되어 오면서 자산평가기준에 대해 최초의 의문이 제기된 것은 세계가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뛰어 도저히 역사적 원가회계로 회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사회불안정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회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6. 25.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내지 자산평가기준에 관한 최초의 저서는 1936년 발간된 스위니(sweeny)의 「安定貨幣」(Stabilized Accounting)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저서에서는 물가지수에 의해 화폐가치를 수정하는 물가변동회계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두번째로 인플레이션의 하나로 대체원가회계(replacement cost accounting)가 처음으로 제의되고 정립된 것은 네덜란드이다. 암스텔담 경제대학 교수인 림퍼그(Limperg)가 주도하여 필립스 전자회사(Philips Industries)에서 대체원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다<sup>4)</sup>.

세번째로 인플레이션의 전기가 된 것은 미국에서 에드워즈와 벨(Edwards and Bell)이 1961년 「기업이익의 이론과 측정」을 저술하면서 부터이다<sup>5)</sup>. 이들은 여러 가지 자산평가

2) Raymond J.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66

3) Henry W. Sweeny, *Stabilized Accounting*, New York : Harper and Bros., 1936.

4) D.R. Brinkman, "Replacement Cost/Current Value Accounting",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2n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77, p.46-2-3.

5) Edgar O. Edwards and Phili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Berkeley and Los Angeles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기준을 열거하고 대체원가에 의한 대체원가회계를 주창하였다. 이 책은 미국에서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한 인플레이의 문제를 회계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것이었다. 이 저서에서는 특히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 자산보유이익(assets holding gain)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를 주로 재고자산판매로 인한 순수한 영업이익과 구별하여 평가하도록 권유하였다.

네번째로 인플레이회계 및 자산평가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건은 1970년 5월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열린 「자산평가와 이익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자산평가기준과 이익개념을 관련시켜 네 그룹의 학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네 그룹은 다음과 같다.

① 역사적 원가 -- 실현이익의 학파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하여 실현된 이익만을 측정하자는 학파로, 이지리(Yuji Ijiri)가 대표적 학자이다.

② 대체원가 -- 기업이익의 학파

대체원가인 현행원가(current cost)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여 기업이익(business income)을 측정하자는 학파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보유이익을 고려하여 이익개념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대표적 학자들로는 에드워즈와 벨(Edgar O. Edwards and Philip W. Bell)이 있다.

③ 현행현금등가액 -- 실현가능이익의 학파

현행현금등가액(current cash equivalent)인 공정시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로 자산을 평가하여 실현가능이익(realizable profit)을 측정하자는 학파로, 챔버스(Raymond J. Chambers)가 대표적 학자이다.

④ 미래현금흐름 할인액 -- 경제학적 이익의 학파

미래현금흐름 할인액(discounted cash flow)인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중심으로 자산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학적 이익(economic income)을 측정하자는 학파이다. 스토버스(George J. Staubus)가 대표적 학자이다.

이러한 네 학파의 주장은 그후의 인플레이회계와 자산평가기준의 정립에 중요시 되었고,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의 기업회계기준의 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자산평가기준으로서 ① 역사적 원가 ②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 ③ 순실현가능가치 ④ 현재가치가 자산평가기준의 네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상의 학술적인 자산평가기준의 연구에 대하여 회계기준상의 자산평가기준의 변천 과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인플레이회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

재원칙심의회에서 APB Statement No. 3를 공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이 보고서에서는 역사적 원가의 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물가변동재무제표를 보충재무제표로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물가변동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구체적 작성지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회계규정 자체가 아니고 단순한 권고문이어서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변동재무제표의 작성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1976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ASR No. 190을 발표함으로써 상장기업에 대하여 대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대체원가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sup>7)</sup>. 이러한 SEC의 요구는 전면적 인플레이회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대체원가정보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의미가 있었다.

1979년 공표된 재무회계기준심의회 의 SFAS No. 33는 인플레이회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sup>8)</sup>. 이 규정에서는 기업이 보충적 정보(supplemental information)로 물가변동회계 또는 현행원가회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의 강제화에는 무리가 있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로써 1984년의 SFAS No. 82에서 일부 공시규정이 수정되었고<sup>9)</sup>, 마침내 1986년 공표된 SFAS No. 89에서는 물가변동회계 또는 현행원가회계의 강제적 공시를 철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sup>10)</sup>. 이로써 미국회계에 있어서 인플레이회계정보의 공시는 자발적 기준이 되었고 강제적 의무화는 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75년 의회에서 위촉된 인플레이회계위원회(Committee on Inflation Accounting)에서 위원장인 샌디랜드스경(Sir Francis Sandilands)중심으로 보고서인 '인플레이회계(Inflation Accounting)'를 발표하였다<sup>11)</sup>.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원가회계 중심의 가치회계(Value Accounting)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국 등 인플레이회계를 도입하려는 국

6) Accounting Principles Board,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APB Statement No. 3*, AICPA, 1969.

7) 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 "Disclosure of Certain Replacement Cost Data", *Accounting Series Release No. 190*, 1976

8)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33*, 1979

9) \_\_\_\_\_,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 Elimination of Certain Disclosures", *SFAS No. 82*, 1984

10) \_\_\_\_\_,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SFAS No. 89*, 1986.

11) Ernst & Ernst, *Additional Views on Accounting Objectives*, Cleveland : Ernst, 1972, p.8.

가들에서 인플레이회계 도입의 동향을 역사적 원가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인플레이회계정보를 보충적 정보 또는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참고자료로 하였다.

### Ⅲ.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자산평가기준의 검토

#### 1. 상법의 자산평가기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산평가기준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은 상법에 따른 원가, 시가, 저가의 기준이었다. 이러한 상법상의 자산평가기준이 중심이 된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해 오면서 법률 제일주의에 의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상의 자산평가기준은 기업회계원칙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기준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등 세법에 있어서도 중심적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상법상의 자산평가기준이 과거의 회계학에 있어서 공헌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자산평가기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산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산평가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법상의 자산평가기준은 그러한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가치 그리고 장기채권은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자산이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시가'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 시가가 유입가치(entry price)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유출가치(exit price)를 가리키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또 시가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현재가치를 가리키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상법상의 자산평가의 원칙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자산평가의 원칙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2.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소가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그밖에 상법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에서는 금전채권,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 영업권 그리고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제453조의 2(개업비의 계상).

제454조(신주발행비의 계상), 제457조(연구개발비의 계상)에서 각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법에서 자산평가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상법에서 특정의 자산에 대해서 자산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자산에 대해 평가기준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층적인 연구를 하여 자산평가기준을 규정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몇몇 자산에 대해 상법에서 자산평가기준을 규정한 것은 일본상법에 따라 규정해 왔던 우리나라 상법의 전통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상법에서 자산평가기준을 완전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간단히 규정함으로써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중 어느 것이 회계규범인가 하는 논쟁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상법을 중요시하는 법률제일주의에 의하여 상법을 기업회계기준보다 중요시하여 상법이 회계규범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 또 회계기준을 제정하던 기관이 정부기관(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됨으로써 관료적으로 법률을 중요시하여 상법을 중요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의 부수적인 법률로 경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규범은 분명히 기업회계기준이다. 회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법의 회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상법의 회계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시 상법규정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기준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기준은 이전의 기업회계원칙을 계승한 것으로 상법의 자산평가기준을 참고하되 원래의 기업회계원칙에서 중요시하였던 '원가의 원칙' 또는 '원가주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의 원칙은 1980,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차 변모하여 시가기준, 순실현가능가치기준, 현재가치기준도 추가되게 되었다.

특히 1998년 12월11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인 ① 원가, ② 시가, ③ 순실현가능가치, ④ 현재가치가 중요한 자산평가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때의 개정은 1997년 말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사태로 IMF/IBRD로부터 한국회계의 개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광범위하게 회계규정을 개정한 결과 나온 산물이다.

이때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최고의 국제회계수준인 미국의 회계기준보다 국제회계기준을 많이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 자산평가기준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이 많이 참고되어 개정되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은 자산평가기준에 관해서는 사실상 미국의 회계기준을 참고



한 것이므로, 1998. 12. 11.의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평가기준은 국제회계기준보다는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중 자산평가기준에 관련한 중요한 규정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제9조(정의)의 4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한다.

####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 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의 두 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평가기준의 대원칙으로 공정가액 그리고 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 현물출자, 증여 등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가액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규정에서 공정가액은 독립된 당사자간의 교환가격이라고 하고 있으나 뒤에 설명하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된 당사자의 교환가격이 아닌 시가를 가리키고 있으며, 아래의 다른 규정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제56조) ---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에 의한 다.

채권의 평가(제57조) ---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재고자산의 평가(제58조)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투자주식의 평가(제59조)

- ①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②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③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다.
- ④ 투자주식 중 시장성 없는 주식을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 투자채권의 평가(제60조)

- ① 투자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② 투자채권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 ③ 투자채권 중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④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 ⑤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부칙 제4조(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한다.

무형자산의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채권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위의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기준을 보면 ① 역사적 원가, ②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 원가), ③ 순실현가능가치, ④ 현재가치의 네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 자산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 처음 기록(취득)될 때에 나타난다. 유가증권, 채권, 재고자산, 투자주식, 투자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경우 모두 그렇다.

공정가액은 시가, 현행원가, 대체원가로 불릴 수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로 공정가액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제9조 4에서 공정가액을 '교환가격'이라고 하여 원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시가 또는 현행원가, 대체원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다음의 자산은 취득 이후에는 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가증권,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다른 경우의 투자채권의 경우가 있다. 이들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가, 현행원가, 대체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자산평가기준으로 직접 규정한 것은 재고자산 평가의 경우로, 제58조의 ②에서 순실현가능가액과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순실현가능가액 대신 '시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규정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고자산의 저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제58조 ③에서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기업에는 수많은 재고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어서 재고자산을 일일이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기준은 상징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고자산은 보통의 경우 원가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market value)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저가기준(lower of cost or market rule)을 적용하며, 저가기준 적용시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로서 순실현가능가치가 되거나 (상한) 순실현가능가치로부터 정상이윤을 차감한 금액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한) 되어 있다<sup>12)</sup>. 이로써 미국의 재고자산평가기준은 무조건 저가기준 적용시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의 경우, 유형자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의 경우,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액을 차감한 잔액의 경우도 순실현가능가치로

12) AICPA, "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New York, 1953), Ch.4, par. 8.

자산을 평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의 투자채권, 장기연불조건  
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인정되고 있다.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유효이자율법만 적용되지 정액법은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의 네 가지 자산평가기준 이외에도 200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  
재평가법에 의해 유형자산을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평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재평가는 유형자산을 시가에 근접시킨다는 점에서 미덕으로 생각되어 많은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나 장부조작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로부터는 잘못  
된 회계관행으로 생각되어 왔다. 더군다나 IMF의 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자산재평가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깊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밖에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주식의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  
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한다든가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  
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 또 만기보유채권의 경우에  
는 취득원가로 한다든가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  
정가액으로 하는 규정 등이 있다. 이들 규정은 모두 위의 네 가지 자산평가기준에 대한 예외  
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맺는말

지금까지 자산평가기준에 관련하여 외국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역사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의 자산평가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산평가기준은 처음에는 원가주의 일변도로 규정되어 왔고, 상법에 의해 원가,  
시가, 저가의 평가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의 영  
향에 따라 ① 역사적 원가, ②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 ③ 순실현가능가치, ④ 현재가  
치의 네 가지 자산평가기준을 인정하게 되었다. 1998년 12월 11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서는 이 네 가지 자산평가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자산평가기준이 1970년 5월 켄사스 대학교에서 개최된 「자산평가  
와 이익결정에 관한 심포지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산평가기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부터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평가기준에 있어서 특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에서 '공정가액'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라 공정가액에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자산평가기준을 정리하는 해석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상의 공정가액은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액"으로 정의되어 있어 역사적 원가인 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의 다른 규정에서 공정가액은 시가,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서 정의에 혼란이 있다. 따라서 공정가액을 교환가액만이 아닌 "상황에 따라 의제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함으로써 원가를 넘어서 상황에 따라 생각될 수 있는 이론적 가치도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 상황에 따라 의제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해석이 필요하다.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치(fair value)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가치기준이 될 수도 있다. 공정가치가 역사적 원가,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의 가치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최상위 가치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역사적 원가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가가 되며 어떤 상황에서 순실현가능가치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현재가치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제도가 2000년 말에는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부활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IMF/IBRD의 관리체제를 벗어나면 자산재평가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재평가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부활이 걱정된다. 기업인들은 자기들의 편리와 유리함에 따라 자산재평가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자산재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에 주석 또는 보충명세서(supplemental information)에 의해 시가 정보 또는 물가변동회계, 현행원가회계의 재무제표를 전통적인 역사적 원가회계의 재무제표에 첨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여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재무제표 자체는 그대로 두고 시가정보를 유형자산 등 특정자산에 대해 주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회계실무인

미국회계기준을 직접 고려하지 않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여러 나라의 공인회계사들의 집합체의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깊이 있는 연구나 토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몇몇 나라의 나쁜 회계관습을 인정함으로써 미국회계기준보다 덜 엄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평가기준의 제정에 있어서도 국제회계기준보다는 미국회계기준을 일차적으로 참고하여 규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가액 개념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가 된 것이다.

넷째, 재고자산평가기준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원가와 시가(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를 먼저 비교하도록 하고 시가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시가가 재고자산평가기준에서 사라졌다.

사실상 재고자산은 시가나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원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시가를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는 시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제표의 주석에 시가정보를 보충명세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가정보는 특히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중요한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에 관한 시가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가정보를 자발적 기준에 의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 기준에 의해 공시하도록 하면 어떤 기업도 이러한 시가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는 마당에 기업의 주요 유형자산에 관한 시가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비록 자산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특성에 의하여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유형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또 상당수 기업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시가는 다른 자산에 비하여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자산의 시가를 별도로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유형자산의 시가를 얻기 힘들다면 먼저 토지에 대해 시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일 토지의 시가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차선책이지만 공시지가(公示地價)로 계산된 토지가액을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지가는 현재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완벽한 시가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시지가가 현재의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부기하는 것도 필요하다.